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기 준 일 : 2023년 12월 31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9월 26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마이더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 [펀드코드: E7398]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00% 이하를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집중투자 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더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판매수수료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투자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01	0.94	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1.31	1.22	2.11
투자비용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71	0.60	1.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0.86	0.81	1.66
투자비용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혹은 모투자신탁)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3년 9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 해외투자) (%)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유주형	1986	책임 (부장)	13개	2,693
운용전문인력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5개	4,151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및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또한,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한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는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한하여 실행할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내 다양한 국가의 통화 표시 자산 편입 여부, 당해 자산 별 가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환헤지 전략 실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의 가치 변동분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 실행에 따른 거래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이 외화자산이지만 환헤지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 Forward 계약 등)을 이용

		한 환혜지를 수행합니다. 목표 환혜지 비율은 외화표시자산(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포함)의 70% 이상 수준입니다. 단, 외화표시자산(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포함)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USD)로 환산하여 미국 달러화(USD)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 헤지 할 계획입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에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ESG기준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투자자산 선정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수익성,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제조물 책임 또는 기업 윤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해당 투자자산이 시장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대비 하회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 선정 시 ESG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들에 비하여 미진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ESG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 및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입수가능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이나 발행인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table><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tr><td>구분</td><td>과세의 주요내용</td></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26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청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A2의 경우 C와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청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2의 경우 C와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739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7399
수수료선취-온라인(Ae)	E74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74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74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74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74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74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74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74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74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74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74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74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74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74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E74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E987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투자신탁은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739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7399
수수료선취-온라인(Ae)	E74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74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74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74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74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74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74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74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74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74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74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74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74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74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E74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E987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3.11.21	펀드 최초 등록일
2024.02.0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변경 반영
2024.03.05	규약 수정사항 및 ESG 펀드 공시기준 반영, A2 클래스 신설
2024.03.13	부책임용역인력 삭제(정찬화 매니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3.27	집합투자규약 변경사항 및 법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정
2024.08.2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S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2024.09.26	부책임용역 삭제(김형중 매니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해외투자) (%)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유주형	1986	책임 (부장)	13개	2,693	-	-	-	-	* 경력년수: 8년 4개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09.12월~12.08월 한국투자증권 - 12.09 월~현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5개	4,151	-	-			* 경력년수: 15년 4개월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 04.01월~07.07월 대우증권 - 07.07 월~현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 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운용역	직위	운용 규모(억원)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200

(주6)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운용했던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유주형	책임운용역	해당사항 없음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정찬화	부책임운용역	2023.11.21~2024.03.13 주2)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3.11.21~2024.09.26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2) 펀드 운용 개시 전 변경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마이더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2의 경우 C와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2의 경우 C와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5개월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C-W)	WRAP계좌보유고객 및 특정금전신탁고객 전용,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무권유저비용(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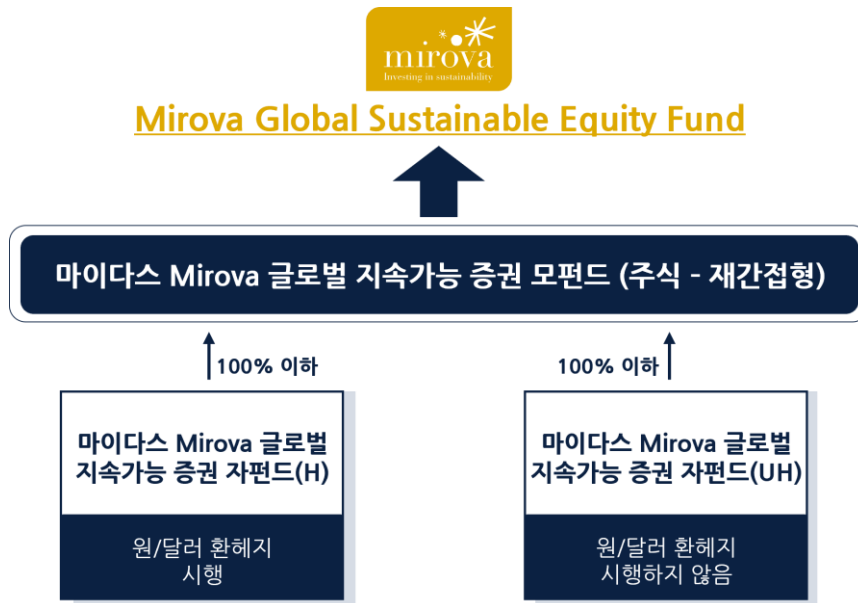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므로, 추가 세부사항은 해당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유럽연합(EU)의 UCITS 규정(UCITS requirement)에 의거하여 역외지역인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기구인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SFDR 별지의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무엇인가요?’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 이하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
②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③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 등이나 주식·채권·통화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환헤지 목적에 한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④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1. 내지 2.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신탁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3. 및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초과일로부터 6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주1) 자세한 사항은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2. 지분증권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 등이나 주식·채권·통화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환헤지 목적에 한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 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증권의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1 내지 5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1 내지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6 내지 9,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법 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본문,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 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 다. (주1)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 방법입니다.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3)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이 투자신탁은 재산 중 집합투자증권 편입 비중인 60% 이상을 ESG 집합투자기구인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 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 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
2.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3. 장외파생상품 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
4.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

	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
6.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예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용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투자신탁(사모투자신탁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6. 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7.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미로바 펀즈(Mirova Funds)”의 하위펀드인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주된 투자대상자산, 펀드 종류, 펀드 규모, 운용회사 등) 및 편입 비중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79조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 (주2)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관련 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Mirova 글로벌 지속가능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100% 이하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SFDR 별지의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무엇인가요?’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없음

-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 : 이 투자신탁은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적 경쟁력을 통합하여 분석 및 선정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지수는 “**MSCI World Net Dividends Reinvested Index**”이나, 동 집합투자기구는 기준지수의 모방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기준지수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새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방안 등에 있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환헤지를 별도로 실행하지 않는 반면, 당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서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 Forward 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 중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70% 이상 수준입니다. 미국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표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해외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해외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의 발생,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용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목표 환헤지 비율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수준으로의 운용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후행적으로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ex. 계약환율 자체에 비용이 선반영)되므로 거래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

락 특성상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비용만을 기재할 경우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 목적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미로바 펀드”)는 지속가능한 투자(SFDR* 제9조로 분류됨)를 목적으로 함] - 미로바 펀드의 투자목적은, 지속가능한 투자에 해당하고 경제적 활동이 하나 이상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중대한 해를 입히지 않고/않거나 하나 이상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실패 위험을 줄이는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및/또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 경제모델에 자본을 배분하며, 투자대상회사가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로바 펀드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SFDR 별지의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무엇인가요?’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로바 펀드는 MSCI World Net Dividends Reinvested Index 대비 측정된 재무성과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전세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분류 : 2021.3.10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로,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을 공시할 때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SFDR에 따라 ‘ESG 리스크가 투자 결정 또는 수익과 관련이 없는 펀드(제6조),’ ‘환경 또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펀드(제8조),’ ‘지속가능한 펀드(제9조)’ 3개로 구분됩니다. 현재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제9조로 분류되어 있지만, 향후 시장상황 혹은 펀드의 운용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5년 9월, 70차 유엔총회에서 전세계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목표’라는 이름으로 SDGs를 채택하여 향후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를 세계적인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습니다. SDGs는 모든 경제 주체가 지속 가능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이 됩니다.
투자 방침 및 투자전략	- 미로바 펀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주제의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을 따릅니다. 이 펀드는 지속가능한 주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주식 선정을 통합하며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 투자절차는 재무적 고려사항과 ESG 고려사항을 통합한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근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식 선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회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① 인정된 지속가능한 테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②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 경쟁적 포지셔닝, 경영진 및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 ③ ESG 관행의 전반적인 질 - 미로바 펀드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① 동 펀드는 에너지, 이동성, 건물 및 도시, 천연자원 관리, 소비, 헬스케어, IT 및 금융 등 8가지 지속가능 주제에 대한 주요 지속가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세계 회사의 주식형 증권에 순자산의 최소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준지수 대비 시가총액, 부문 및 가중치에 대한 제약 없이 최적의 투자 기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확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펀드는 기준지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로바 펀드는 신흥시장에 순자산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미로바 펀드는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상품에 순자산의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미로바 펀드는 (직접적으로) 인도, (홍콩에서 발행된 H 주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중국, (MICEX RTS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 1)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과 ESG 요소와의 연관성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은 어떤 투자 전략을 따르나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투자대상자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ESG 요소(전부 또는 일부), ESG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비교 또는 참고지수 선정 시 그 사유 및 지수에 대한 설명, 국내외 ESG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 등 운용과 정 전반에 걸쳐 ESG 요소가 반영되는 프로세스의 경우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속가능성 지표가 사용되니까?’항 및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지수가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되어 있나요?’항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ESG 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본 펀드는 ESG 전담팀의 ESG 리서치/평가결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ESG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제공자가 수집한 원본 ESG 데이터만을 사용할 뿐 외부 평가나 외부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속력 있는 투자전략은 무엇인가요?’항 및 ‘투자대상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침은 무엇인가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투자자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ESG 요소와 해당 요소 간 고려비중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은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나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본 펀드는 ‘[별첨]SFDR 별지’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실행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 활동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지는 않아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 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개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펀드명</td><td>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Class SI-NPF/A(USD) / ISIN : LU1712236014]</td></tr> <tr> <td>펀드 종류</td><td>증권(주식형)</td></tr> <tr> <td>집합투자업자</td><td>Natixis Investment Managers International</td></tr> <tr> <td>하위집합투자업자</td><td>MIROVA US LLC</td></tr> <tr> <td>설정일</td><td>2018년 6월 14일 [Class SI-NPF/A (USD) 기준]</td></tr> <tr> <td>규모</td><td>약 51억 USD (약 48억 EUR) (2023.07.31 기준)</td></tr> <tr> <td>등록소재지 / 감독기관</td><td>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td></tr> <tr> <td>운용역 (2022.12.31)</td><td>Jens Peers, CFA (핵심전문인력) : Mirova US CEO 겸 CIO (운용경력 25년,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19년)</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펀드명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Class SI-NPF/A(USD) / ISIN : LU1712236014]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Natixis Investment Managers International	하위집합투자업자	MIROVA US LLC	설정일	2018년 6월 14일 [Class SI-NPF/A (USD) 기준]	규모	약 51억 USD (약 48억 EUR) (2023.07.31 기준)	등록소재지 /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운용역 (2022.12.31)	Jens Peers, CFA (핵심전문인력) : Mirova US CEO 겸 CIO (운용경력 25년,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19년)
구분	내용																		
펀드명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Class SI-NPF/A(USD) / ISIN : LU1712236014]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Natixis Investment Managers International																		
하위집합투자업자	MIROVA US LLC																		
설정일	2018년 6월 14일 [Class SI-NPF/A (USD) 기준]																		
규모	약 51억 USD (약 48억 EUR) (2023.07.31 기준)																		
등록소재지 /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운용역 (2022.12.31)	Jens Peers, CFA (핵심전문인력) : Mirova US CEO 겸 CIO (운용경력 25년,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19년)																		

	기준)	Hua Cheng, CFA : Mirova US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운용경력 18년,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9년) Soliane Varlet, CFA : Mirova US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운용경력 23년, ESG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 16년)
	구조	미로바 펀즈(Mirova Funds)의 하위펀드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여러 하위펀드로 이루어진 변동자본투자회사(SICAV)형태 펀드의 하위펀드
	펀드 기준통화	USD (미국 달러)
	기준지수	MSCI World Net Dividends Reinvested Index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목적 - 지속가능한 투자에 해당하고 경제적 활동이 하나 이상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중대한 해를 입히지 않고/않거나 하나 이상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실패 위험을 줄이는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및/또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 경제모델에 자본을 배분하며, 투자대상회사가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로바 펀드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SFDR 별지의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무엇인가요?'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투자절차는 재무적 고려사항과 ESG 고려사항을 통합한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근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한 주식 선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회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인정된 지속가능한 테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 경쟁적 포지셔닝, 경영진 및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 - ESG 관행의 전반적인 질 주 1)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과 ESG 요소와의 연관성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은 어떤 투자 전략을 따르나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투자대상자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ESG 요소(전부 또는 일부), ESG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비교 또는 참고지수 선정 시 그 사유 및 지수에 대한 설명, 국내외 ESG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 등 운용과 정 전반에 걸쳐 ESG 요소가 반영되는 프로세스의 경우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속가능성 지표가 사용됩니까?'항 및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지수가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되어 있나요?'항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ESG 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본 펀드는 ESG 전담팀의 ESG 리서치/평가결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ESG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제공자가 수집한 원본 ESG 데이터만을 사용할 뿐 외부 평가나 외부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속력 있는 투자전략은 무엇인가요?'항 및 '투자대상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침은 무엇인가요?'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투자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ESG 요소와 해당 요소 간 고려 비중은 '[별첨]SFDR 별지' 내용 중 '이 금융상품은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나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본 펀드는 '[별첨]SFDR 별지'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실행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 활동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지는 않아 기재를 생략하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손실 위험 원금과 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 변동성으로 인한 경우 포함) 변동하므로, 환매 시 주식은 원가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자본금이 투자자에게 전액 환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율 위험: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증권에 투자합니다. 환율 변동은 이러한 펀드의 편입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외환 익스포저는 기준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 대비 그렇지 않은 투자자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그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따라, 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하여 환위험을 헷지하거나 낮추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을 항상 헷지 하거나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위험: 투자자산의 가치는 시장위험 요소(주가, 금리, 환율, 또는 상품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정 시기에 걸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증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위험은 펀드의 편입증권의 가치 및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 및 그로 인한 수익은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실적은 미래의 투자실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ESG기반 투자 위험: 펀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기준") 기준에 따른 투자방침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ESG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펀드의 목적은 특히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됩니다. ESG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의 독자적인 모형, 제3자의 모형 및 데이터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ESG 점수 산정 및 발행회사의 모형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산정기준을 주로 고려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례 분석, 발행인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 및 기업 방문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은 평가 기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관련 발행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섹터나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SG 기준을 투자 절차에 적용하면 집합투자업
--	---

	자가 ESG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장 기회에 관계없이 재무 외의 요인으로 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제3자로부터 수령한 ESG 데이터가 때때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이나 발행인을 부정확하게 평가하여 부정확한 지시를 내리거나 펀드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증권을 간접적으로 편입 또는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에 확립된 ESG 기준에 대한 회사의 적합성 판단 시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ESG 원칙들은 각 해당 펀드의 ESG 통합 솔루션의 다양성을 허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으로 인해 해당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프레임워크가 없는 ESG 기준 적용을 둘러싼 잠재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정보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설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운용시 운용상황, 운용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가 청산 및 해산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ESG 이행 현황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는 SFDR 제2(17)조에 정의된 지속가능한 투자에만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순자산의 98.15%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속가능한 투자목표와 부합합니다. Mirova가 수행한 관여 우선순위 및 관여 정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mirova.com/en/research/voting-and-engage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연차보고서의 추가 미감사 정보 항목에 포함된 SFDR 정기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SFDR 별지

	하위펀드	SFDR 분류	ESG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해당/해당없음)
1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제 9 조	해당

유럽에서 시행하는 SFDR에 따라 펀드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을 갖지 않거나 환경적 및/또는 사회적 특성을 도모하지 않는 펀드(제6조 펀드)
- 환경적 및/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펀드(제8조 펀드)
-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을 갖는 펀드(제9조 펀드)

위와 같은 분류는 유럽의 SFDR에 따른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ESG 집합투자기구 분류 기준과 상이합니다.

다만, SFDR에 따른 제6조 펀드의 경우 ESG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8조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과정에서 ESG를 어느 정도 고려하나, 각 펀드 별로 투자 목적, 투자 전략, 투자 과정에서 ESG요소를 고려하는 정도가 상이하여, 운용사가 각 펀드별로 ESG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ESG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펀드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EU) 2019/2088 제9조 제1항 내지, 제4a항 및 규정 (EU) 2020/852 제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전 공시 양식

펀드명: 미로바 글로벌 지속가능 주식형 펀드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법인 식별번호: 549300YFL5N62BE1F89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펀드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은 다음의 회사들에게 자본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 인구통계, 환경, 기술, 지배구조(총칭하여 "전환테마")라는 네 가지 장기적 전환에 의해 창출되는 기회를 다루는 회사
- 상품, 서비스 및/또는 관행을 하나 이상의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회사

아울러, 안정적인 기후와 번영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위집합투자업자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의 고유의 지속가능 영향 평가 체제는 자산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SDG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DG에 기여하는 투자 대상을 보유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규정 (EU) 2020/852 ("녹색분류체계 규정") 녹색분류체계 규정 제9조에 명시된 다음의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투자합니다: (가)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 (나)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라) 오염 방지 및 관리, (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각 회사의 경제활동이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및 측정됩니다. 투자 기회에 따라, 이 펀드는 상기 환경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항상 모든 목표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 벤치마크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금융상품이 촉진하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한 투자목적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속가능성 지표가 사용됩니까?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의 달성은 다음의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SDG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순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지속가능성 의견 체계에 따라 측정된 지속가능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펀드 자산의 비율;
2. SDG 및/또는 환경적·사회적 영향권(기후,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사회경제적 발전, 건강 및 웰빙, 다양성 및 포용성 등)당 펀드 자산출자액의 비율
3. 이 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해당 투자대상기업의 탄소발자국(배출 Scope 1, 2, 3)을 고려한 전세계 평균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예상 영향 및 이

는 다음의 두가지 주요 지표를 중정적으로 고려함

- 직접 배출량과 공급업체 및 상품의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회사 활동의 «수명주기»에서 발생하는 배출 «유발»
- 에너지 효율 또는 «그린» 해결책 개선으로 인한 배출 «방지»

주요 부정적 영향은 투자 결정이 환경, 사회 및 직원 문제, 인권 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사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가장 주요한 부정적 영향을 말합니다.

● **지속가능한 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적 또는 사회적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나요?**

지속가능성 분석은 회사의 활동 및 관행으로부터 기인한 환경 및 사회적 잔존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DNSH 테스트"). 이러한 분석은 투자대상기업이 환경 및/또는 사회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특정 부문이나 활동에 노출되는 정도와 관련 환경 또는 사회적 논란에 노출되는 정도를 특히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결과로서,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경제적 활동 또는 관행이 UN SDG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를, 다른 긍정적 기여와 관련없이, 체계적으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속력 있는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표는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각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잔존 ESG 위험 분석의 일환으로, 이 펀드는 주요 부정적 영향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합니다(SFDR 제2(17)조에 따른 지속가능 투자 평가를 위한 통합 규제기술기준 (consolidated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for assessment of sustainable Investment)에 언급된 필수 PAI 지표 관련 데이터 고려 포함). 특정 PAI 지표의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해당 PAI 지표와 유사한 테마를 다루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대체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투자를 고려하는 회사의 부문 및 사업 모델의 특수성에 따라 다음에 기반한 복합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순위가 결정됩니다.

- 국제기구의 과학 기반 데이터(예: 에너지 강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에 대한 회사의 익스포저 분석
- 회사의 소재지, 사업 모델 및 공급망 조직을 통한 노동권 및 직원 문제(예: 보건 및 안전 위험, 특정 인권 위험을 지닌 국가에 대한 노출 등) 분석
- 지역사회 및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영향권 분석
-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논란에 대한 스크리닝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절차 및 관행이 특히 해당 PAI와 관련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위험을 경감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자대상기업의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투자적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나요?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기업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회사들의 실적 및 뉴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논란을 파악합니다. 회사들의 개입 및 해결 조치가 고려됩니다. 잠재적 준수 위반 위험

은 확실성을 얻기 위해 하위집합투자업자가 관여함으로써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또는 UN 기업 및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회사는 중대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격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지속가능성 요소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나요?

☒ 네

PAI 지표는 지속가능성 분석 체계에 통합되며 그 결과는 DNSH 테스트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FDR 제11(2)조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니오



이 금융상품은 어떤 투자 전략을 따르나요?

투자전략은 투자목적, 위험 감수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안내합니다.

이 펀드는 다양한 테마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구하며, 하나 이상의 SDG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전환 테마와 연계된 기회를 다루는 전세계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는 재무적 사항과 지속가능성 사항을 모두 고려한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테마와 종목 선정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은 다음을 종합하여 구성됩니다.

- 테마별 접근법(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테마 또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발행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SDG 달성에 미치는 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내부 평가시스템에 의해 입증됨)
- 최고의 투자대상(Best-in-universe) 접근법(광역시장지수이자 이 펀드의 기준지수인 MSCI World Net Dividend Reinvested ("기준지수")와 비교하여 사업 부문에 상관없이 최고의 평가를 받는 발행인을 선정하는 방식)
- 배제법: 이 펀드는 배제를 지속가능성 접근법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펀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활동(화석연료, 담배, 군사 장비 등)에 노출된 회사들의 경우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최소 기준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일반적인 투자방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투자방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속력 있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펀드의 구속력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펀드는 긍정적인 영향(즉,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지속가능성 의견 방법에 따라 높은 영향, 보통 영향 또는 낮은 영향으로 평가됨)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SDG 달성에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또는 발행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펀드는 낮은 영향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에 대한 이 펀드의 익스포처가 기준지수의 익스포처보다 체계적으로 높습니다. -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온도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방법에 따라 유발 및 방지된 배출량을 고려할 때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나리오와 부합합니다. - 이 펀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활동(화석연료, 광유, 담배, 군사 장비 등)에 노출된 회사들의 경우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최소 기준 배제 방침을 준수합니다.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은 건전한 경영 구조, 직원 관계, 직원 보수 및 세무 준수를 포함합니다. ● 투자대상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침은 무엇인가요? 지배구조 관련 고려사항은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재무평가 및 지속가능성 의견 체계에 반영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환경 및 사회 문제(직원 관계 등)에 대한 건전한 모니터링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서의 지속가능성 통합 - 건전한 기업 윤리 관행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정한 가치 분배(특히 직원 보수 관련) 및 조세 준수 - 회사 경영 품질 분석 - 회사의 지배구조와 장기적인 비전 조율 - 발행인의 집행기관, 감독기관 및 주주 간의 권한 균형 - 회사 경영 관련 보상 패키지 - 이사회의 품질과 독립성 또는 소액주주의 이해 존중 분석 자산배분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금융상품의 자산 배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펀드는 SFDR 제2(17)조에 정의된 지속가능한 투자에만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투자의 비율은 이 펀드 순자산의 90%로 설정됩니다(#1 지속가능). 환경 및/또는 사회적 목표의 지속가능한 투자는 환경 및/또는 사회적 SDG의 달성과 관련하여 평가됩니다. 자산 배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투자의 비율은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최소 약정으로서 간주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펀드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 및 환위험 관리 목적의 파생상품을 순자산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2 지속불가). 기준 벤치마크는 금융상품이 촉진하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수가 기준 벤치마크로 지정되어 있나요? 해당사항 없음
위험관리	①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방안 -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를 위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고서 및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을 월간 단위로 제공받고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펀드 성과, 자산구성현황, 성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있으며,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위험 관리 - 집합투자업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 투자신탁자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

손실위험	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및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또한,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한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는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한하여 실행할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내 다양한 국가의 통화 표시 자산 편입 여부, 당해 자산 별 가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환헤지 전략 실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의 가치 변동분을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 실행에 따른 거래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이 외화자산이지만 환헤지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 Forward 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목표 환헤지 비율은 외화표시자산(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포함)의 70% 이상 수준입니다. 단, 외화표시자산(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포함)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USD)로 환산하여 미국 달러화(USD)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 헤지 할 계획입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외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유동성자산에 투자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가 해외인 경우, 국내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손실을 입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ESG기준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투자자산 선정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수익성,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제조물 책임 또는 기업 윤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해당 투자자산이 시장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대비 하회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 선정 시 ESG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들에 비하여 미진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ESG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 및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입수가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이나 발행인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부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①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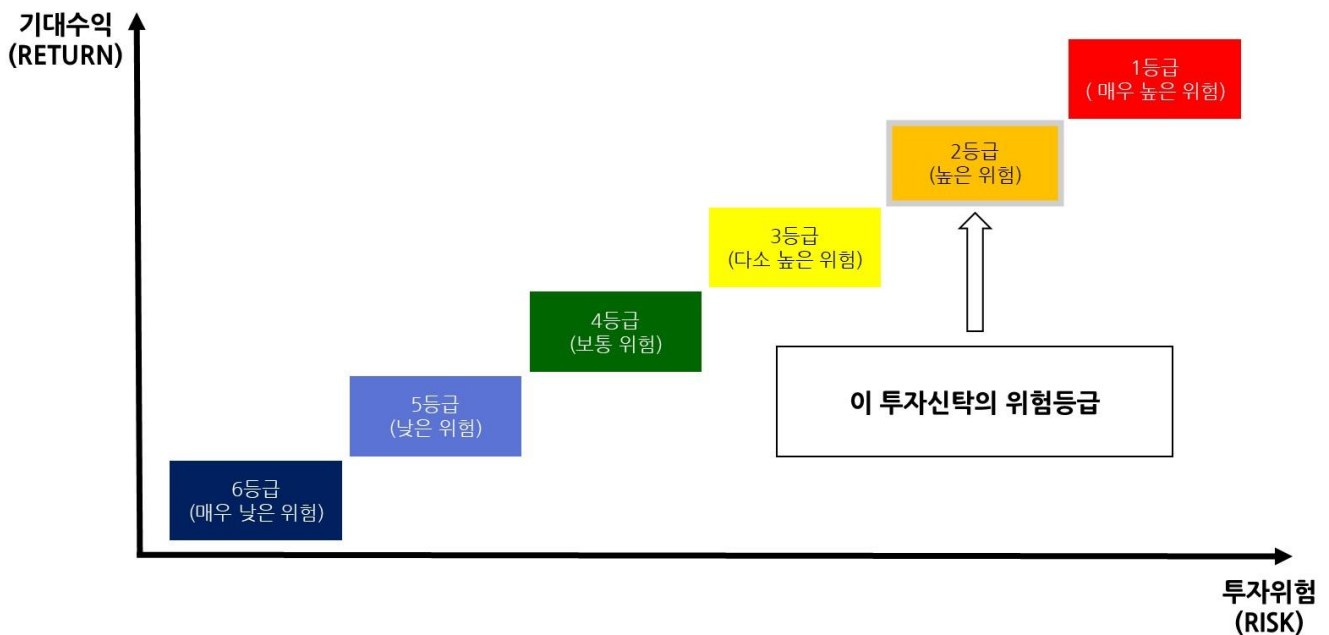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게 되며,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양한 경제 변수에 수익이 변동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하락 등의 높은 손실위험 및 환율변동위험 노출되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며,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u>1등급</u>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5) 재간접펀드의 경우 당해 재간접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6) 이 투자위험 등급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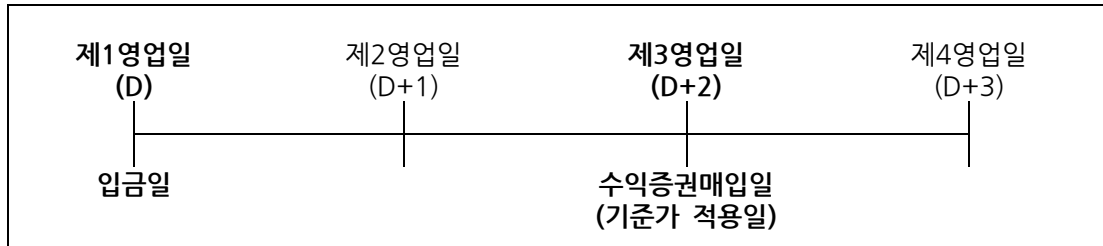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

무권유저비용(AG)	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계좌보유고객 및 특정금전 신탁고객 전용,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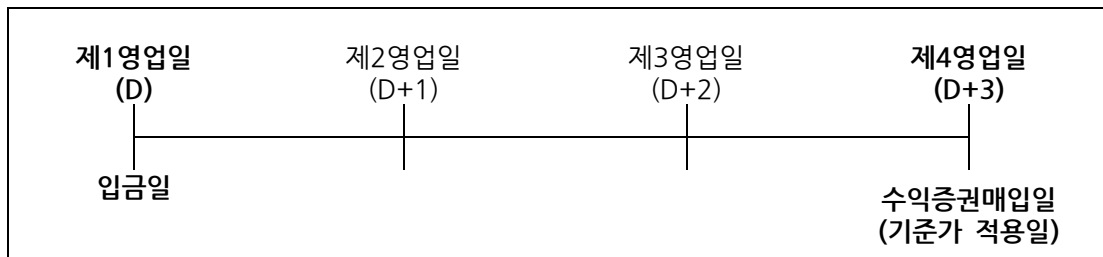
	투자자 전용이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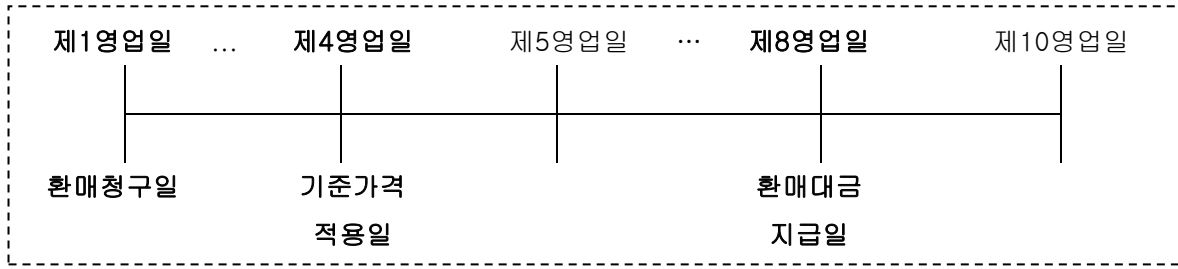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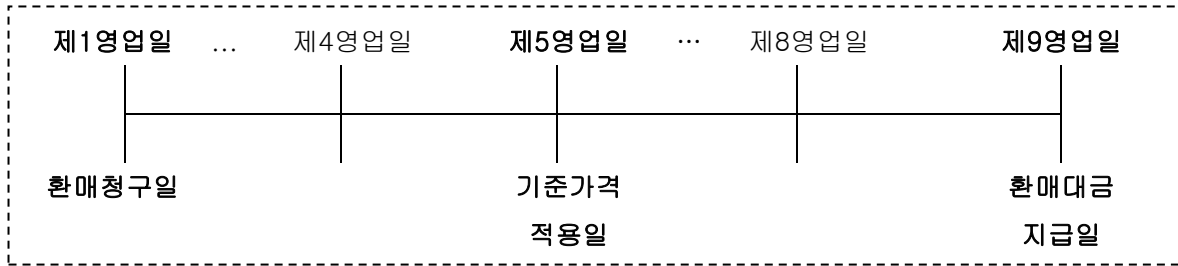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 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 시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 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이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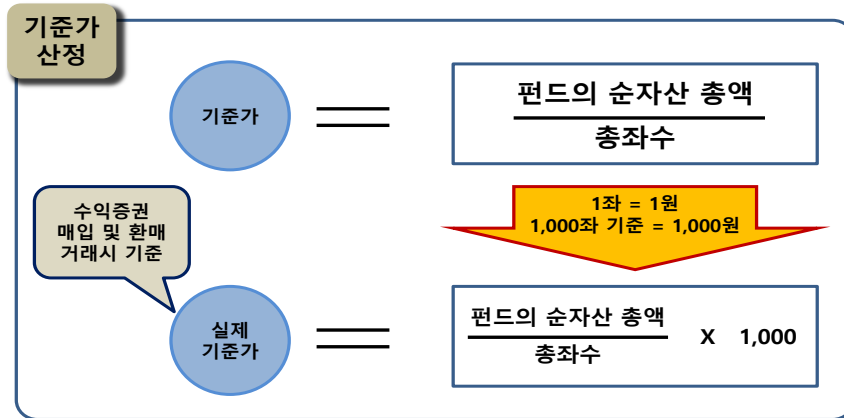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주당 발행가격 및 환매가격은 평가일(록셈부르크의 정규 은행 영업일) 다음 영업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로 매일 산정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일에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해당 평가시점의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정하며, 펀드의 기준 통화의 백 단위 근사값으로 전환합니다.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외화표시자산의 평가 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채권평가회사의 선정과 변경, 제공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④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⑤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⑥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⑦ 미수금·미지급금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납입금액의 1.0% 이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납입금액의 0.6% 이내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납입금액의 0.5% 이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계좌보유고객 및 특정증권 신탁고객 전용,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객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0.15%이내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	-	

개인연금(S-P)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수탁 회사 보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35	0.60	0.04	0.02	1.01	0.940	-	1.01	1.81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0.35	0.75	0.04	0.02	1.16	0.940	-	1.16	1.9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5	0.30	0.04	0.02	0.71	0.600	-	0.71	1.51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5	0.42	0.04	0.02	0.83	-	-	0.83	1.6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35	0.90	0.04	0.02	1.31	1.220	-	1.31	2.1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5	0.45	0.04	0.02	0.86	0.810	-	0.86	1.6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35	0.63	0.04	0.02	1.04	-	-	1.04	1.8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35	0.50	0.04	0.02	0.91	-	-	0.91	1.7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35	-	0.04	0.02	0.41	-	-	0.41	1.21	-

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0.35	0.72	0.04	0.02	1.13	-	-	1.13	1.9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0.35	0.36	0.04	0.02	0.77	-	-	0.77	1.5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35	0.68	0.04	0.02	1.09	-	-	1.09	1.8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0.35	0.34	0.04	0.02	0.75	-	-	0.75	1.55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5	0.29	0.04	0.02	0.70	-	-	0.70	1.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5	0.28	0.04	0.02	0.69	-	-	0.69	1.4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35	0.27	0.04	0.02	0.68	-	-	0.68	1.4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0.35	0.01	0.04	0.02	0.42	-	-	0.42	1.22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기타비용은 증권 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 보수·비용(연 0.80%로 예상하여 적용)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을 합산한 총액을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반영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수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 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3년 9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은 합리적인 비용 추정이 어려울 수 있어 증권거래비용 등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7)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기구는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급하나, 그 비용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 ① 기타비용: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거래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대차거래비용(대차중개지급수수료 등)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증권거래비용	-

- ③ 금융비용: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금융비용	-

- ④ 상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2	309	422	665	1,38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83	476	678	1,114	2,40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8	312	442	722	1,5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9	469	689	1,163	2,571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198	278	450	96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4	365	535	901	1,9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243	336	536	1,13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5	410	593	986	2,1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4	275	423	742	1,68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6	443	682	1,195	2,7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6	181	278	487	1,10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0	349	536	940	2,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19	336	589	1,34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9	387	595	1,042	2,3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191	294	515	1,17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59	553	969	2,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6	132	232	52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4	254	391	685	1,5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237	365	640	1,45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98	406	624	1,093	2,4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162	249	436	99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1	330	507	889	2,0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9	352	617	1,40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94	397	611	1,070	2,4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e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8	242	425	96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9	326	501	878	1,99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6	396	9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4	315	485	850	1,9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1	145	223	391	89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3	313	481	844	1,9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143	220	385	87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2	311	478	838	1,9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시드(C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8	136	238	54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5	256	394	691	1,57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증권거래비용은 제외)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A1클래스 1.0%, A2클래스 0.6%, Ae클래스 0.5%, AG클래스 0.7%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와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1개월, 종류 A2와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5개월, 종류 Ae와 Ce는 약 2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16년 9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주1)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주식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C-P1, C-Pe1, S-P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①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table><tr><th>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tr><td>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td><td rowspan="2">600만원 (900만원)</td><td>16.5%</td></tr><tr><td>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td><td>13.2%</td></tr></table>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수령시 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S-R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 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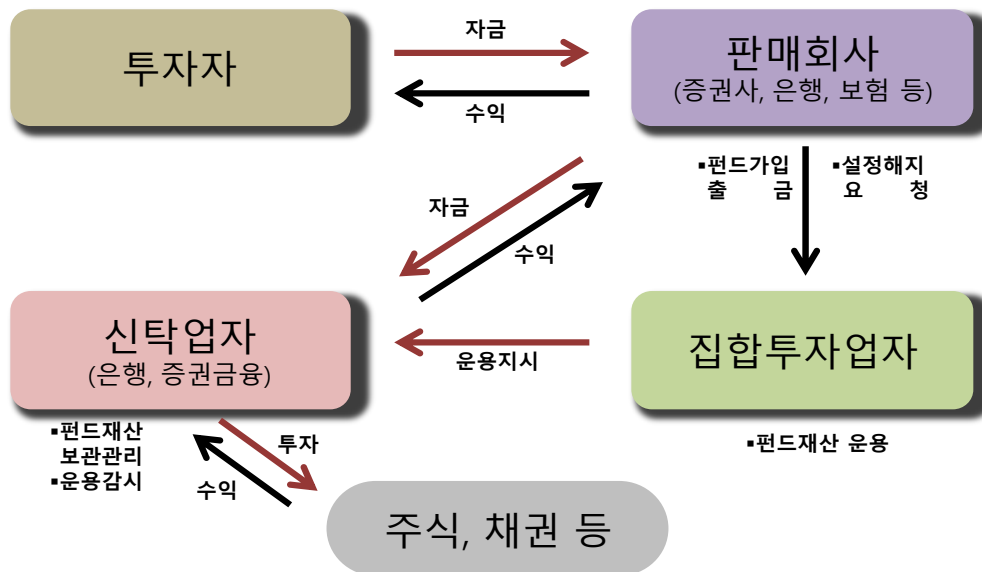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신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억원)
자본금	1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10%)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3.3.31	'22.3.31	항 목	'23.3.31	'22.3.31
현금및예치금	264	210	영업수익	480	464
유가증권	602	615	영업비용	262	229
유형자산	441	416	영업이익	218	235
기타자산	96	91	영업외수익	2	55
자산총계	1,403	1,332	영업외비용	38	17
유동부채	72	8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83	224
고정부채	-	0	법인세비용	43	51
부채총계	72	87	당기순이익	140	172
자본금	100	100			
자본조정	-49	-50			
잉여금	1,280	1,1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자본총계	1,331	1,246			

라. 운용자산 규모

[2023.12.29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01,066	2,905	60,240	105	412	5,170	-	716	-	170,613

※ 일임자산을 포함한 전체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연락처	02-3455-2114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연락처	02-6714-4600
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연락처	02-399-3350	02-3215-1400	02-398-39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7. ESG 관련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결의사항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⑦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①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수익자에게 손실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집합투자업자는 3) 및 4)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이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주식	1. 평가 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

	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이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에서 고유재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투자목적

-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

나. 투자금액 : 2억원

다. 투자기간 : 최초 투자일(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예상 투자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회수 계획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회수하되,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 투자금 회수 관련 공시 방법

- 1) 최초 투자일(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 2) 투자금 환매시 환매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 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